

# 2024년 제3차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통합공고

UNIST에서는 울산·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,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4일  
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

## 1 공통사항

- 지원규모 : 총 498백만원 (약 29개社 지원)
- 지원기간 : 2024.08.01. ~ 2024.12.31. (5개월간)  
※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내용

				(단위:백만원)	
세부사업명	지원내용	2024년 지원규모	3차 공고예산		
산학공동R &D 및 실증화 (통합Ezbaro 활용)	목적	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,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 및 실증 지원			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기술개선 지원</b> - 대상기업 제품의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</li> <li>· <b>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한 기업 강화</b> - 대상기업의 제품 애로사항 해결 공동연구 추진 공공연구장비 활용 지원 등</li> <li>· <b>실증화</b> - 새로운 기술, 제품, 또는 서비스의 유효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검증 지원</li> <li>· 특화분야(미래형전자) 연관기업-연구자 간 산학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기업성장 및 실증화 지원</li> </ul>		120	0
	대상	(80백만원+40백만원) x 1개 산학 컨소시엄 ※산학 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			
기업 혁신 지원	목적	특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지원하여 이전기술 기반 자체 R&D 역량 보유 지원			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시작품-시제품 제작</b>: '직접 제작'과 '외부제작'으로 분류 - 직접제작: 인건비, 재료비 및 기타 제반 직접 제작 비용 지원</li> <li>- 외부제작: 외부전문기관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</li> <li>· <b>기술고도화</b> (외부전문기관 활용) - 특허포트폴리오 구성, 추가 특허출원 및 등록 등 비용 지원</li> <li>· <b>후속 R&amp;D 기획 지원</b> (외부전문기관 활용) - 타사업 연계를 위한 R&amp;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</li> </ul>		300	50
	대상	최대 30백만원 x 8개 기업			
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	목적	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, 국내외 기술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상용화 기반 구축			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성능평가 및 시험분석</b> - 신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</li> <li>· <b>국내외 인증 지원</b> -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</li> </ul>		30	15
	대상	최대 15백만원 x 2개 기업			
기업자문 지원 (애로기술, ESG컨설 팅)	목적	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			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전문가 활용비 지원</b> - 사업분야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</li> </ul>		48	27
	대상	1.5백만원 x 소진시까지 ※ 평가를 통한 심화 컨설팅 지원			

※ 세부 사업예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특화분야: 첨단전자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, (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
### ■ 지원절차(공통)

단계	일정(예정)	추진내용
모집공고	2024.06.24.	- UNIST 및 재단 홈페이지 등 공고 개제 -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
↓		
신청서접수	2024.06.24. ~ 2024.07.07.	-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- 사업비 소진 시 까지
↓		
선정평가 (UNIST)	2024.07.18.(예정)	-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-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혜기업 선정
↓		
과제 협약 등	2024.08.01.	- 2자(기술핵심기관-특화지원기관) 협약 및 수혜기업 확약서 제출
↓		
사업수행 및 중간점검	사업기간 중	- 과제 추진 현황 확인 (필요시) - 중간 성과 점검 등 (필요시)
↓		
사업결과점검 (UNIST)	2025.2 중	-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-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
↓		
사업결과 통보	2025.2 중	-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
↓		
세부사업 정산	2025.2 중	-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
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※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

### ■ 기업별 지원내용

구분	사업명	사업비(최대)	사업기간
지역기업 성장지원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30,000천원	최대 5개월 이내
	성능평가 및 시험분석	15,000천원	최대 5개월 이내
	기업자문지원	1,500천원 / 5,000천원(심화)	최대 5개월 이내

### 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2024.06.24.(월) ~ 2024.07.07.(일) 24:00까지

○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(메일제목: 사업명\_기업명)

사업명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서준혁	052-217-1766	hyuk@unist.ac.kr
성능평가 및 시험분석	임종희	052-217-1765	ijhee@unist.ac.kr
기업자문지원	임종희	052-217-1765	ijhee@unist.ac.kr

■ 신청자격 검토사항

검토사항	내용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</li> </ul>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</li> <li>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극히 불량(불성실수행)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</li> </ul>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</li> </ul>
<p>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(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핵심기관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* 상기의 신용등급 'BBB'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 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li> <li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 </div>
사전 지원 제외 조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업의 경우 :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</li> <li>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, 외부전문기관,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-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,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</li> <li>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</li> </ul>

■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
-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, 관련 서류의 열람,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■ 관련법령 및 규정
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</li> <li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</li> </ul>
<b>관련규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</li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</li> <li>○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</li> </ul>

※ 울산울주강소특구 사업 수행 시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이 적용되며,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

## 2

# 세부지원내용 : 혁신역량 초기기업지원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■ 사업목적

- 특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지원하여 이전 기술 기반 자체 R&D 역량 보유 지원

#### ■ 사업내용

- 대상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지원(시제품 제작, 기술고도화 및 후속 R&D 기획 등)을 직접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■ 예산규모 : 50백만원 (대상기업 2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30백만원)

- ※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#### ■ 지원기간 : 최대 5개월 이내 ※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(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#### ■ 지원내용

-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
-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

연번	지원명	상세내용	한도 (단위:천원)
1	시제품 제작 (직접제작과 외부제작으로 분류)	◎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·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제작 지원 - 직접제작: 인건비, 재료비 및 기타 제반 직접 제작 비용 지원 - 외부제작: 외부전문기관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	20,000
2	기술고도화 (외부전문기관 활용)	◎ 특허포트폴리오 구성, 특허동향분석, 선행특허조사, 특허방어전략 수립, 특허맵 구성 등 기존 기술 고도화 지원	15,000
3	후속 R&D 기획 지원 (외부전문기관 활용)	◎ 타사업 연계를 위한 R&D 기획 및 사업 신청 지원	10,000

※ 기업별 최대 30,000천원 이내 비목별 상한 고려하여 예산 편성

### 3. 추진체계



### 4.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

#### ■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전문역량	·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	30
	·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	
	·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	
	·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	
성과목표	·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	30
	·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	
기대효과	·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	40
	·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	
<b>합계</b>	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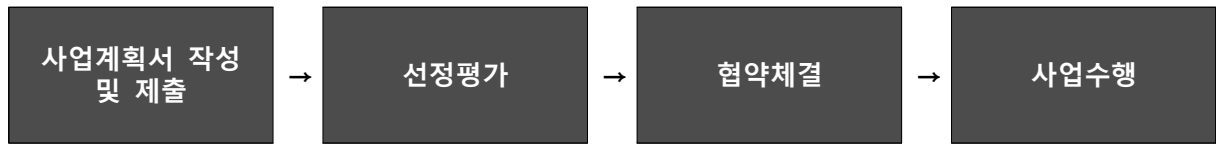
- ※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,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“우수” 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
- ※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# ■ 평가방법

-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 로 분류함
- ‘지원가능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신청기업은 『[별지2] 사업계획서양식(혁신역량초기기업지원)』을 제출
-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

### ■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-mail 제출
  - 담당자: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육성팀 서준혁 (052-217-1766)
  - 전자메일: hyuk@unist.ac.kr
  - ※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출 자료 목록

<b>필수</b>	① 사업신청 공문 (자사양식) 및 사업계획서 (별첨자료 참조)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별첨자료 참조)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(별첨자료 참조)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(별첨자료 참조) ④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(별첨자료 참조)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<b>해당시</b>	①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 및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② 연구소기업 등록증 ③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- 기타사항: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, 3책 5공 적용 제외

### 3

## 세부지원내용 :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■ 사업목적

- 지역 내 시험분석 인프라, 국내외 기술 규격 및 품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

#### ■ 사업내용

- 수혜기업 제품의 성능평가,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■ 예산규모 : 15백만원 (대상기업 1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15백만원)

- ※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#### ■ 지원기간 : 최대 5개월 이내 ※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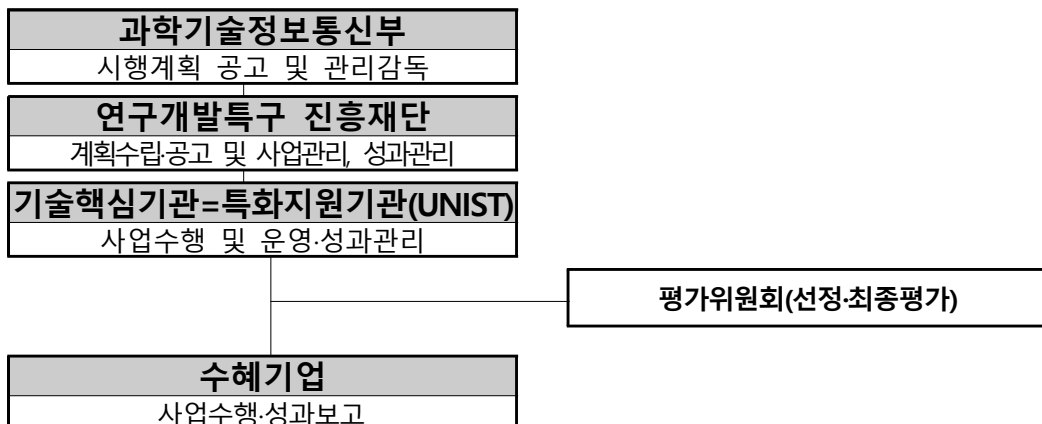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자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#### ■ 지원내용

-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,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을 인증·분석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
- 인증·분석 외부전문기관은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

### 3. 추진체계





## 4.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

### ■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전문역량	·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문성	30
	·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	
	· 지원기업의 Needs 분석 방법 제시	
	· 대표자의 사업수행 의지	
성과목표	· 성과목표 및 추진방법	30
	· 성과목표의 실현 전략	
기대효과	· 수행기업의 Scale up 전망 제시	40
	·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후속 투자 가능성	
<b>합계</b>		100

※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,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“우수” 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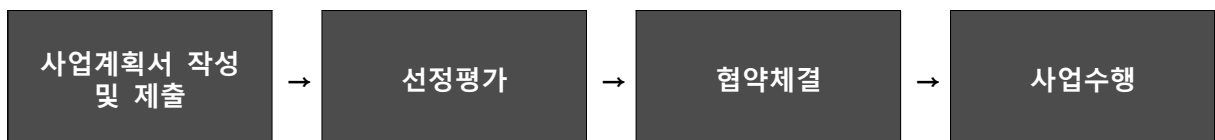
※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 ■ 평가방법

-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가능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신청기업은 『별지4』 사업계획서 양식(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)을 제출
-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

■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-mail 제출
  - 담당자: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육성팀 임종희 (052-217-1765)
  - 전자메일: ijhee@unist.ac.kr
  - ※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출 자료 목록

<b>필수</b>	① 사업신청 공문 (자사양식) 및 사업계획서 (별첨자료 참조)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별첨자료 참조)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(별첨자료 참조) ④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(별첨자료 참조) ⑤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(별첨자료 참조)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<b>해당시</b>	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■ 기타사항: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, 3책 5공 적용 제외

## 4

# 세부지원내용 : 기업자문지원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■ 사업목적

- 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

#### ■ 사업내용

-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-point 전문가 자문 지원
-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별 ESG 컨설팅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■ 예산규모 : 27백만원 (대상기업 9개사 내외, 기업당 15백만원 및 심화 컨설팅 5백만원)

※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#### ■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

※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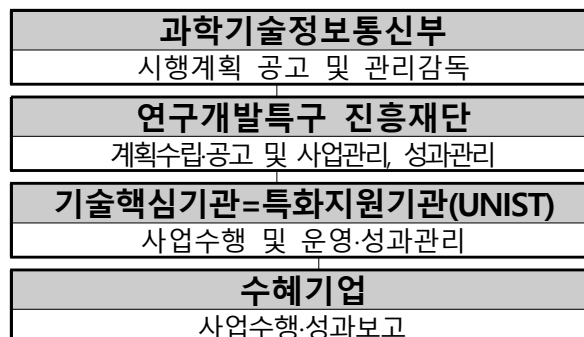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(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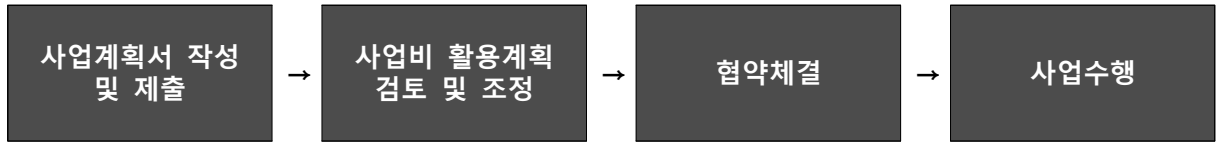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내용

- 애로기술, 기술개발, 제품화, 기술사업화,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, 회계, 세무,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-point 자문
- 수요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컨설팅 및 자문
  - 지원방법: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 실시

### 3. 추진체계



#### 4.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신청기업은 『[별지5] 신청서 양식(기업자문지원)』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
  - 담당자: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육성팀 임종희 (052-217-1765)
  - 전자메일: ijhee@unist.ac.kr
  - ※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 - ※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

#### ○ 제출 자료 목록

필수	① 기업자문지원 신청서 (별첨자료 참조)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해당시	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■ 기타사항: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, 3책 5공 적용 제외

강소 특구	특화분야		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 매칭)	
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	
UNIST (울주)	미래형 전지 산업	이차전지	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양극/음극소재,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/ 금속 주조업(C243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(C282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장치제조업(C281) / 전자부품제조업(C262) /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(C191)/기초화학물질제조업(C201) / 기타화학제품제조업(C204)	
			수소전지	수소연료전지분리막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/ 금속 주조업(C243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 /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 /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
			태양전지	유리창 부착형 투명 태양전지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
			탄소섬유 복합재	탄소섬유 복합재 기반 경량 배터리 팩 구조물, 3D프린팅 기반 경량부품 생산장비, 초경량/고강도 프레임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 /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(C191) /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 /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 / 화학섬유 제조업(C205)